

18 (第113回-行政自治第5次)

<p>서울특별시 표창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48호 다. 제출일자 : 1998년 11월 18일 라.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p> <p>2. 제안이유 표창조례가 제정(1966년)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용어 등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 가. 표창권자(안 제4조) ○ 표창장, 상장 : 시장,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함) ○ 감사장 : 시장, 소속기관의 장 나. 표창수여대상(안 제7조, 제8조, 제9조) ○ 표창장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3년이상 근속공무원,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 상장 : 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기관, 개인·단체 등 ○ 감사장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 등</p> <p>다. 공적심의회 운영(안 제13조) ○ 제1공적심의회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 : 서울시 3급이상 공무원중 5인이상 10인이내(위원장 포함) - 기능 : 국무총리표창이상 훈격의 정부 포상 및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p> <p>○ 제2공적심의회 - 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 위원 : 시 4급이상 공무원중 5인이상 10인이내(위원장 포함) - 기능 : 시장표창대상 및 장관급상당표창 추천대상자 공적심의</p> <p>○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 기능 :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p>	<p>라. 표창사실확인서 교부(안 제17조) ○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p> <p>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제11조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상훈법 제8조(치탈) ① 서훈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 상훈법시행령 제10조(치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 기타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는 죄는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법처벌법에 규정한 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115조, 제117조, 제171조,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예외로 한다.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p> <p>○ 정부표창규정 제19조(대통령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교부) ①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 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장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장을 받은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p>
---	---

<p>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서식 및 세자비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5. 검토의견</p> <p>가.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표창장·상장·감사장 등으로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상패·부상 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표창조례로서,</li> <li>○ 1966년도 10월 6일 조례 제454호로 제정된 이래 7차례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그 내용과 용어 등이 불합리하고 미비점이 많아 관련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전문개정안임.</li> </ul> <p>나. 조문별 주요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목적, 적용범위, 표창종류, 표창권자, 표창등의 수여대상, 표창대상자추천공적심의회 등에 대하여 총 18개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요개정내용을 보면,</li> <li>○ 안 제4조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이던 것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3급이상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고,</li> <li>○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장수여규정과 훈련성격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나 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상장 수여규정, 그리고 지역사회사업이나 시민운동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사장수여규정 등을 두고 있음.</li> <li>○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 본청에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별도로 소속기관별 공적심의회를 설치·운영도록 규정하고 있음.</li> </ul> <p>다.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한 공무원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시행되는 것</li> </ul>	<p>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직자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공적을 표창·격려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기양양 차원에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매늦은 감은 있으나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한 것은 고무적이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li> <li>○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격자종 공무원의 경우 3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직기간은 비록 짧지만 특수한 공적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li> <li>둘째, 안 제10조에 근거한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인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의 표지 및 속면의 문양이 모두 같은 형태의 시로고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액자로 보관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도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li> </ul>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p> <p>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75호 다. 제출일자 : 1999년 5월 20일 라. 회부일자 : 1999년 5월 24일</p> <p>2. 제안이유</p> <p>물품의 품종별 취득단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모품구매 취급부서를 다양화하며,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품 구입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수요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li> <li>○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겸수)시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함.(안 제28조)</li> <li>○ 비품 및 소모품의 품종기준중 일부를 변경</li> </ul>
---	---